

# 천칭폐지령과 메이지유신\*

박삼헌\*\*

syamony@konkuk.ac.kr

##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바쿠후 말기의 에타 인식
- III. 왕정복고 이후의 에타 인식
- IV. 나오며 : 천칭폐지령이 만들어 낸 주술

## I. 들어가며

1868년 12월 바쿠후(幕府)를 폐지하고 성립한 메이지 정부는 기존의 신분제를 해체하는 정책들을 추진했다.<sup>1)</sup> 1869년 6월 17일 화족칭령(華族稱令), 같은 달 25일 사졸족칭령(士卒族稱令), 1870년 9월 19일 평민 묘자(苗字) 허가령, 1871년 8월 23일 화족(華族)·사족(士族)·평민 혼인허가, 같은 달 28일 천칭(賤稱) 폐지령, 1872년 1월 29일 졸족칭(卒族稱) 폐지령, 같은 해 10월 9일 예창기(芸娼妓) 해방령 등이 그것이다.<sup>2)</sup>

본고에서는 이중 천칭폐지령을 소재로 삼아 근대 일본에서 이른바 ‘부락민’이라 불리며 차별받던 사회적 소수자들의 역사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천칭폐지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논문은 제56회 전국역사학대회(2013.10.25, 부산대학교) 공동주제 ‘역사 속의 소수자: 공존과 배려를 위해’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부교수, 일본근대사 전공

1) 메이지 정부는 태양력을 도입하면서 1872년 12월 3일을 1873년 1월 1일로 정했다. 본문에서 태양력 도입 이전 연도의 월일은 음력이다.

2) 이중 화족칭령은 기존의 신분제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외의 법령들과 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해서는 류교열(1998), 『明治初期의 華族制度-宗族制度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제9집 등 참조

에타(穢多)·히닌(非人)<sup>3)</sup> 등의 호칭을 없애고, 앞으로 신분과 직업을 평민과 동일하게 한다.<sup>4)</sup>

에타는 소나 말의 사체를 처리하는 신분으로 주로 피혁업에 종사했으며, 형집행과 경찰 및 소방업무 등을 부담했다.<sup>5)</sup> 전통적으로 소나 말의 사체에는 케가레(穢れ, 不淨)가 많다는 관념이 강했고, 이 관념은 점차 에타에게도 적용되어 이들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규정하고 천시하는 근거가 되었다. 히닌은 경조사(경조사가 있는 집에서 축사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모노모라이(物貰い) 권리를 지녔으며, 연말에 세키조로(節季候)<sup>6)</sup>, 토리오이(鳥追)<sup>7)</sup>, 다이코쿠마이(大黒舞)<sup>8)</sup> 등과 같은 거리 예능으로 생계를 잇는 신분이다. 이들도 형집행과 경찰업무를 부담했다.<sup>9)</sup> 근세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분에 따라 거주지가 나누어져 있었으므로, 에타는 야쿠쇼(百姓, 농민)가 거주하는 무라(村)로부터 격리된 부락(部落)에서, 히닌은 히닌 소옥(小屋)에서 거주하도록 강제되었다.

천칭폐지령이 사민(四民)=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기본 신분에서 제외되었던 에타와 히닌이라는 천민신분을 없애고, 이들을 기존의 농공상과 동일한 ‘평민’으로 규정하는 조치였던 만큼, 그 성격은 이른바 ‘문명개화’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천칭폐지령이 법적인 조치였을 뿐 사회적·경제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타의 특권이었던 소나 말의 사체 처리권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들의 경제생활이 곤란해지기도 했다. 또한 에타 출신을 ‘구평민’과 구별되는 ‘신평민’으로 호적에 기재하는 등 ‘일상적’ 차별도 계속

3) 에타와 히닌은 차별 용어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료 용어이기도 하므로, 본고에서는 그 사료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4) 1871년 8월 28일 『穢多非人ノ称ヲ廢シ身分職業共平民同様トス』, 太政官布告 第448号, 内閣官報局編(1974 복각), 『法令全書』第4卷, 原書房, p.337.

5) 일본부락해방연구소 지음, 최종길 옮김(2010), 『일본 부락의 역사-차별과 싸워온 천민들의 이야기-』, 어문학사, p.114 참조.

6) 연말연시에 2~3명의 그룹이 얼굴을 붉은 천으로 가리고 ‘세키조로고자레야(せきざろござれや)’를 외치며 노래하고 춤추면서 새해를 축하하고 쌀과 돈을 받는 자.

7) 에도시대 무라(村) 행사 중 하나. 정월 14일 밤과 15일 아침에 2번 해로운 새를 쫓는 노래를 부르며 술 등을 치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것.

8) 신년에 다이코쿠텐(大黒天) 모습을 하고 집 앞에서 “오셨다. 오셨다. 복신(福神)을 앞세워 다이코쿠 님이 오셨다...”라고 노래를 부르며 답례를 받는 자.

9) 일본부락해방연구소 지음, 최종길 옮김, 앞의 책, pp.114~115 참조.

되었다.

그럼에도 천칭폐지령은 에타와 히닌 출신이 자신들을 “사민(四民) 동등의 권리”를 부여받은 “황국(皇國)의 인민”으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다.<sup>10)</sup> 근대 국민국가는 자국과 타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국경과 함께,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며 국가적 과제를 자발적으로 떠안는 국민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천칭폐지령은 ‘왕정복고 쿠데타’ 이후 ‘일군만민(一君萬民)’이라는 이념 아래 신분제가 해체되고 국민이 형성된 근대 일본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천칭폐지령에 관해서는 우에스기 사토시(上杉聰) 씨의 연구가 하나의 정점을 이룬다. 우에스기 씨는 근세 일본에서 인정되던 ‘천민의 택지’의 ‘지자(地子) 면제’가 “유신정권의 기반인 지조개정의 중대한 장애로 자각되었을 때, 오후라쇼(大蔵省)의 천칭폐지령 원안이 급하게 작성되고 이에 대한 허가가 신속히 결단되었다”며 “천칭폐지령과 지조개정의 직접적 관련성”을 주장한다.<sup>11)</sup>

우에스기 씨의 연구는 불명확했던 천칭폐지령의 성립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현재 천칭폐지령의 성립과정에 대한 정설로 평가받고 있다.<sup>12)</sup> 이 논문도 우에스기 씨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우에스기 씨는 천칭폐지령의 성립과정을 주로 법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천칭폐지령 이전에 나타난 에타·히닌 관련 담론들은 천칭폐지령 ‘결정의 역사적 전제’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에스기 씨가 밝혀냈듯이 천칭폐지령의 ‘직접적인 요인’은 지조개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바쿠후 말기부터 여러 에타·히닌 관련 담론들이 등장하고, 이것이 천칭폐지령이라는 법령으로 귀결되기까지 일관되게 천칭 ‘폐지’가 제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지조개정의 ‘직접적인 요인’

10) 1881년 11월 28일, 『復権同盟結合規則』, ひろた まさき編(1990), 『日本近代思想大系22 差別の諸相』, 岩波書店, pp.115~116.

11) 上杉聰(1990), 『明治維新と賤民廃止令』, 解放出版社, pp.129~130. p.135(초출은 上杉聰(1980), 『解放令』成立過程の研究』, 『部落解放研究』第21・22号).

12) 에타·히닌에 대해서는 제도·운동·사상 등의 관점에서 무수히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천칭폐지령 이후의 ‘부락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천칭폐지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에스기 씨의 연구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한국학계에서도 시마자키 토손(島崎藤村)의 『하카이(破戒)』를 소재로 삼은 피차별 부락관련 문학연구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 메이지초기의 피차별민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천칭폐지령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천칭폐지령 발포를 전후로 등장한 에타·히닌 관련 담론들을 근대 일본의 국민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부락민’으로 불리며 근대 일본의 소수자로 차별을 받은 에타와 히닌 출신에게 메이지유신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알아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 II. 바쿠후 말기의 에타 인식<sup>13)</sup>

1840년 여름에 시작된 아편전쟁은 1842년 8월 청이 영국과 불평등한 난징(南京) 조약을 맺으면서 끝났다. 같은 해 6월 네덜란드 상선은 “아편전쟁이 끝나면, (영국군이) 일본의 항구에 나타나 처음엔 정중히 무역하기를 부탁하겠지만, 일본 측이 부당한 취급을 하거나 무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이 발생할 것”<sup>14)</sup>이라는 정보를 바쿠후에게 전했다.

이를 계기로 바쿠후는 같은 해 7월, 해안에 접근하는 외국선을 무조건 격파하러던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연료·물·식량 등을 요구하는 외국선에게 희망하는 물품을 건네주고 귀항시키도록 명했다. 또한 8월에는 영국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오시번(忍藩)과 가와고에번(川越藩)에게 에도만(江戸灣) 경비강화를 명했다. 물론 네덜란드가 전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보의 정확성이 아니라,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았던 영국 함대의 일본 파견이라는 대외위기의 대응책으로 외국선에 대한 유화책과 함께 해방론(海防論)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쿠후의 해방론은 에도만 방어를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13) 에타가 천민의 중심으로 취급된 것은 숫자상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것은 에타가 스스로 집과 저택을 가지고 마을이나 촌락을 형성하여 죽은 소나 말의 처리권을 중심으로 한 직무나 이와 관련된 생업을 가지면서 주변 무라(村)에 피혁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위생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기 때문이다(일본부락해방연구소 지음, 최종길 옮김, 앞의 책, p.194 참조).

14) 藤田覚(2003), 『近代の胎動』, 藤田覚 編, 『日本の時代史17 近代の胎動』, 吉川弘文館, p.79.

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달리하는 해방론도 나타났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자하니, 당산(唐山, 중국을 의미함-인용자, 이하 동일)의 소란이 마무리 되는대로 나가사키, 사츠마(薩摩), 에도(江戸) 세 곳에 병함(兵艦)을 보낸다는 영국인의 말을 전합니다. (중략) 외관(外冠)은 국내의 쟁란과 다릅니다. 사세(事勢)에 따라서는 세계 만국에 비할 바 없이 백대(百代)를 연면히 이어온 황통(皇統)의 안위와도 관계됩니다. 도쿠가와가(德川家)의 영욕(榮辱)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주(神州, 일본을 의미함) 전체의 휴위(休威)를 같이하여 이 나라가 살기위해서는 어떻게든 귀천존비(貴賤尊卑)를 불문하고 우념(憂念)을 가져야 합니다.<sup>15)</sup>

이것은 1842년 11월에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이 바쿠후의 해방괘(海防掛) 마츠시로번주(松代藩主) 사나다 유키즈라(真田幸貫)에게 제출한 해방의견서이다. 사쿠마는 대외위기로 인식된 영국인의 병함=‘외관(外冠)’이 ‘도쿠가와가의 영욕’만이 아니라, ‘세계 만국에 비할 바 없이 백대를 연면히 이어 온 황통’과 ‘신주’의 ‘안위’와 관계되는 사안이므로 ‘귀천존비’의 구별 없이 ‘우념’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주’는 바쿠후나 사츠마 등의 경계를 아우르는 일본국의 영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본국의 영토 인식은 ‘세계 만국에 비할 바 없이 백대를 이어온 황통’과 ‘귀천존비’의 차이 없음을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에타 폐지를 처음 언급했다고 평가받는 호아시 반리(帆足万里)의 『동잠부론(東潛夫論)』(1844)에서도 나타난다.

현재의 에타라는 존재는 옛날 오우(奥羽, 현재의 동북지방)에 살던 에미시(蝦夷)의 후손이다. 아주 옛날 포로로 잡힌 에미시를 이세(伊勢) 신궁으로 데려와 소와 말을 잡아 가죽과 고기를 바치게 하고, 신산(神山)의 나무를 베어 바치게 했는데, 야마토히메미코토(倭姫命, 스이닌(垂仁) 천황의 네 번째 딸이라 일컬어지는 전설상의 인물)가 이들을 여러 주(州)로 이주하도록 조정에 청했다. 이것을 사에키베

15) 佐久間象山, 『海防に関する藩主宛上書(天保13年 11月 24日)』, 佐藤昌介·植手通有·山口宗之編(1971), 『日本思想大系55 渡辺崋山, 高野長英, 佐久間象山, 横井小楠, 橋本左内』, 岩波書店, pp.263~266.

(佐伯部)라 하며, 에타의 조상이다. 이후 다무라마로(田村麻呂, 헤이안시대의 정이 대장군)가 오우지역을 평정하고 에미시를 모두 일본인으로 삼아, 에타도 상인(常人)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 에타는 도적을 감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도적의 소굴이다. 평인(平人)과 교제하지 않아 그 악행이 드러나지 않으니, 제후(諸侯, 각 번)의 지배영역(城下)에 오랑개[夷狄] 마을이 있는 것과 같다. 모쪼록 이들을 소집하여 대신(大神)에게 참배시키고 부정(不淨)을 씻어내 평인으로 만든 후, 에조도(蝦夷島, 홋카이도)의 넓은 땅으로 이주시켜 농사와 목축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sup>16)</sup>

호아시는 “러시아인이 동변(東邊)을 뺏으려는”<sup>17)</sup> 대외위기의 대응책을 서술하는 가운데, 그중 하나로 ‘에조도’=홋카이도로 에타를 이주시켜 방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홋카이도 방비책으로는 에타만이 아니라 ‘10만석 제후(諸侯)’=번주(藩主)들의 이주도 언급되고 있으며,<sup>18)</sup> 나아가 ‘남(南) 신타나오(シタナヲ)를 병합’한 후 “제후(諸侯) 네다섯 명을 이주시켜 방비하고 일본의 죄인(罪人) 등 수 만 명을 이주시켜 신일본으로 삼아 오랫동안 본방(本邦)의 원국(援國)으로 삼을 것”<sup>19)</sup>도 제안하고 있다. 에타도 번주도 죄인도 모두 그 ‘귀천준비’에 상관없이 ‘일본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호아시가 ‘신도(神道)’의 입장에서 “천하도 본래 왕실의 천하”<sup>20)</sup>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만큼, 에타·번주·죄인=‘일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왕실의 천하’, 즉 사쿠마 식으로 말하면 ‘신주’가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타의 경우, 일찌감치 ‘상인(常人)’과 동일한 ‘일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大神)에게 참배시키고 부정(不淨)을 씻어내’는 절차가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도’를 근거로 ‘왕실’의 신성함을 강조하면 할수록, 케가레로 규정되는 에타라는 존재는 신사참배를 통해 부정을 씻어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일본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번주나 ‘일본의 죄인’은 그 자체로 러시아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일본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에타는 신사참배라는 케가레 씻김을 거치지

16) 帆足万里, 『東潜夫論』(1844), 滝本誠一 編(1916), 『日本經濟叢書』卷26, 日本經濟叢書刊行會 수록, p.403. 호아시는 히지번(日出藩)의 가로(家老)를 역임하면서 번정 개혁을 주도했다.

17) 위의 책, p.402.

18) 위의 책, pp.402~403.

19) 위의 책, p.426.

20) 위의 책, p.392.

않으면 ‘일본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sup>21)</sup>

이러한 에타 인식은 바쿠후가 폐지되고 왕정복고라는 명분하에 복고신도와 국학자들이 ‘신도국교화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까지도 여전히 존재했다.<sup>22)</sup> 예를 들어 1869년 8월에 메이지 천황의 도쿄 행행(行幸)이 예고되면서 “에타무라(穢多村)는 명석이나 갈대밭 등으로 가리고 문밖으로는 나오지 말 것”<sup>23)</sup>이라는 주의사항이 내려졌고, 11월 도쿄에 도착한 후에는 모든 ‘도쿄 시민’에게 “어인홀(御仁恤)의 어주(御酒)”가 하사되었지만 에타의 우두머리 단자에몬(彈左衛門)에게는 하사되지 않았다.<sup>24)</sup>

한편 바쿠후 말기에는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 바쿠후는 물론이고 바쿠후 반대파에 속하는 초슈번(長州藩) 등도 ‘기개 있는 에타’로 구성된 부대를 결성하기도 했다.<sup>25)</sup> 이런 가운데 에타들도 신분 상승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1867년 5월 셋츠국(摂津国, 지금의 오사카부 서북부와 효고현 동남부) 와타나베무라(渡辺村)의 에타 우두머리 타이코야마타베(太鼓屋又兵衛)가 바쿠후에 제출한 탄원서이다.

21) 우에스기 씨는 호야시의 『동잡부론』이 “피차별부락 이용을 통한 ‘해방’이지 진정한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했던 이민족기원설이 이미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어 있었고, 이것이 새롭게 발생한 영토의식이나 국가의식과 충돌하면서 거꾸로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내면서 ‘해방’ 사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평가한다(上杉聡, 앞의 책, pp.20~21).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고에서는 바쿠후 말기의 대외위기라는 환경 속에서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영토의식과 국가의식이 ‘신주(神州)’와 ‘대신(大神)’으로 표상되는 ‘천황’을 매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일본인’이라는 범주에 에타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케가레 씻김이라는 신도적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것은 에타의 국민화 과정과 ‘사민(四民)’의 국민화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살펴보듯이 에타의 기원이 도호쿠지방의 에미시라는 인식이든 한반도 출신이라는 인식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신분보다도 천황을 매개로 일본인=국민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된다.

22) 1869년 7월 제정일치의 원칙에 따라 신기관(神祇官)을 태정관보다 상위에 설치했다가 1871년 폐번치현 이후 신기성(神祇省)이 태정관의 아래로 격하되기까지이다. 우연하게도 이 시기가 끝날 무렵 천칭폐지령이 내려졌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23) 1869년 8월 『東京行幸御道筋心得方ヲ令ス』, 太政官布告 第686号, 内閣官報局編(1974), 『法令全書』第1卷, 原書房, p.277.

24) 1869년 11월 21일 『天皇東行のため弾内記配下の者にも酒等の下賜を東京府にて検討』, 南博責任編集(1990), 『近代庶民生活誌11 天皇・華族』, 三一書房, pp.360~361.

25) 일본부락해방연구소 지음, 최종길 옮김, 앞의 책, pp.179~184 참조.



이국(異國)의 화친교역 요구에 대해 양이(攘夷)의 명이 내려지면, 국은(國恩)에 보답하고자 우리들은 선봉에서 사력을 다해 그 명을 받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외국인과도 화친을 맺으면서 고기를 먹는 우리들이 국지(國地)를 부정하게 하므로 사민(四民) 밖에 있도록 하는 것은 심히 한탄스럽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신분에서 에타라는 두 글자를 없애는 자비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sup>26)</sup>

이 탄원서에 대해서는 바쿠후와 대립하던 도사번사(土佐藩士)의 중용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sup>27)</sup> 그렇다 하더라도 에타 스스로 ‘국은에 보답하고자 선봉에서 사력을 다해 명을 받드는’ 것을 근거로 ‘에타라는 두 글자’의 폐지를 바쿠후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외위기라는 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호아시와 같은 지배층에게 에타는 ‘에조도’라는 영토=‘신주’를 지킬 수 있는 ‘일본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신사참배라는 케가레 씻김을 거쳐야만 하는 차별적 존재로 인식된 반면, 에타에게는 케가레 씻김이라는 조건과 상관없이 ‘국은’에 보답하기 위해 ‘선봉에서 사력’을 다할 수 있는 존재=‘일본인’라는 자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요컨대 바쿠후 말기의 대외위기라는 환경 속에서 에타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영토를 수호하고 국은에 보답하는 국가 차원의 행위야말로 ‘에타 두 글자’ 폐지의 중요한 요건이라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에타의 인식은 바쿠후 폐지와 왕정복고라는 명확한 정치체제의 변화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 Ⅲ. 왕정복고 이후의 에타 인식

메이지 정부는 바쿠후 지지파와 보신(戊辰) 전쟁을 치루는 반면, 한편으로는 ‘어일신(御一新)’을 슬로건 삼아 천황을 정점으로 한 국가체제 만들기를 시작했다. 1868년 3월에 발표된 ‘5개조 서문’은 그 일환이었다. 그 내용은 “①널리 회

26) 1867년 5월 『大坂穢多渡辺村より嘆願書』, 南博 責任編集, 앞의 책, p.369.

27) 尾佐竹猛 著, 磯川全次 校訂・解説(1999), 『明治四年賤称廃止布告の研究』, 批評社, p.100. 도사번사들의 의도가, 고기를 먹는 서양인들과 화친을 한다면 동일하게 고기를 먹는 에타를 차별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바쿠후의 개국 정책을 풍자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의를 일으켜 제반 문제를 공론(公論)에 따라 결정한다. ②상하(上下) 합심하여 활발히 경륜(經綸)을 편다. ③문무백관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 뜻을 이루고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기존의 누습(陋習)을 타파하고 천하의公道(公道)를 따른다. ⑤지식을 세계에 구하고 황국(皇國)의 기반을 굳건히 다진다”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바쿠후 말기 이래 입헌정치론의 한 형태로 제기되어 온 공의정체론(公議政體論)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발표 형식은 왕정복고라는 제정일치의 이념에 어울리는 신도식(神道式)으로 거행함으로써 천황의 신권성(神權性)을 강조하는 것이었다.<sup>28)</sup> 여기에는 이제 막 시작된 근대 일본 국가체제가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정통성을 천황의 초월적인 권위로 실현하는 ‘천황친정(天皇親政)’에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천황이 아직 “유충(幼沖)의 천황”<sup>29)</sup>에 불과하여 정통성 확보에 불충분함이 있었기 때문에 ‘공의여론(公議輿論)’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공의여론’을 제1조로 선언한 메이지 정부는 이를 담보할 정부기구를 설치했다. 1869년 3월 7일 도쿄의 히메지번(姫路藩) 저택에서 개최된 공의소(公議所)가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각 번의 대표로 선출된 공의인(公議人) 227명이 당시의 국가적 현안을 논의했다. 물론 공의소에서 가결된 14건의 안건 중 천황의 재가를 받아 메이지 정부의 법령으로 포고된 것이 단 1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역할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하지만 비록 관허(官許)라 하더라도 공의소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공의소일지(公議所日誌)』와 『의안록(議案錄)』의 형태로 출판되어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공의여론’ 형성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공의소에 제출된 에타 관련 의견서의 법적 실효성은 낮았지만, ‘상하귀천’의 구별 없는 ‘공의여론’ 형성에 끼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1870년 마츠야마번(松山藩)의 관할 아래에 있는 에타의 우두머리 한우에몬(半右衛門)은 “이미 도쿄의 집의원(集議院)에 건의서가 제출되어 있는 바” “우리들도 다른 평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탄원서를 제출

28) 大久保利謙(1986), 『大久保利謙歴史著作集1 明治維新の政治過程』, 吉川弘文館, p.60.

29) 多田好問編(1906), 『岩倉公実記』中卷, 岩倉公田蹟保存会, p.159.

30) 유명무실화된 공의소는 같은 해 7월 8일 ‘직원령(職員令)’에 의한 관제개혁에서 집의원(集議院)으로 축소 개편되었다가 이듬해 1870년 9월에 폐쇄되었다.

하기도 했다.<sup>31)</sup>

그렇다면 공의소에 제출된 에타 관련 의견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우선 호아시 류키치(帆足龍吉)의 의견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호아시 류키치는 앞에서 검토한 호아시 반리의 아들이다. 이 때문인지 의견서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아버지 호아시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다.

장차 에조(蝦夷)의 적(바쿠후 군을 의미함)이 평정되면 이곳을 개척해야 하는데, 이곳은 인구가 적어서 개척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에타라 불리는 자들이 있다. 옛날 오우(奥羽)에 살던 에미시의 후손이다. 아주 옛날 포로로 잡힌 에미시를 이세 신궁으로 데려와 소와 말을 먹고 그 가죽과 고기를 바치게 하고, 신산(神山)의 나무를 베어 바치게 했는데, 아마토히메미코토가 이들을 여러 주(州)로 이주하도록 조정에 청했다. 이후 다무라마로가 오우지역을 평정하고 에미시를 모두 일본인으로 삼아, 에타도 상인(常人)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 에타는 도적을 감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도적의 소굴이다. 평인(平人)과 교제하지 않아 정치에 큰 장애가 된다. 이제 어일신에 따라 대사면을 실시하고, 이들을 소집하여 이세신궁에 참배시켜 평인(平人)으로 만든 후 에조치(蝦夷地)로 이주시켜 금광·목재·어업 등을 일으키고, 농경과 목축에 종사하게 하면, 에타도 평인이 된 것을 기뻐하며 진력을 다할 것이다. 이야말로 지당한 조치라 생각한다(동일한 부분은 밑줄표기).<sup>32)</sup>

아버지 호아시가 ‘제후(諸侯)의 지배영역에 오랑캐 마을이 있는 것과 같다’고 에타의 폐해를 평가했던 것에 비해, 아들 호아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정치에 큰 장애가 된다’고 평가하며 ‘어일신에 따라’ 에타의 폐지를 언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밑줄 참조). 따라서 이것은 바쿠후 말기 지배층의 에타 인식, 즉 케가레 셋김을 전제로 한 에타 폐지론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아시의 의견은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에타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히로시마번(広島藩)은 에타가 마츠리[神祭]에 관여하는 것을 엄하

31) 1870년 『機多頭半右衛門から平民同様取扱いの嘆願書を提出』, 原田伴彦・上杉聡 編(1984), 『近代部落史資料集成』第1巻 『解放令』の成立, 三一書房, p.437.

32) 1869년 3월·4월, 『官版 議事案』, 明治文化研究会編(1955), 『明治文化全集』第1巻 憲政編, 日本評論社, p.144.

게 금지했고,<sup>33)</sup> 오사카부(大阪府)는 유아(湯屋)나 조루리(浄瑠璃) 공연장에 에타가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는 등,<sup>34)</sup> 에타는 여전히 케가레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타 인식이 보편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보듯이 천칭폐지령 발표에 대한 평민들의 저항이 매우 강했던 것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각 현은 에타의 케가레 씻김이라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호아시의 의견과 전혀 다른 새로운 논리도 제시되고 있다. 다음은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가 제출한 ‘히닌·에타 폐지 의견’(1869.4)의 전문이다.

히닌·에타의 연유를 알 수 없더라도 인류(人類)임에 틀림없는 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은 심히 천리(天理)를 어긋난다. 또한 외국과 교제를 하는 지금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보다 더한 국욕(國辱)은 없을 것이다. 모쪼록 어일신(御一新)에 맞게 히닌·에타 호칭을 폐지하고 서인(庶人)에 포함시키길 바라는 바이다. 이미 옛 바쿠후에게 단나이기(彈内記) 지배하의 에타들이 그 호칭의 폐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황송하게도 왕정(王政)의 큰 결함이 되므로 이번에 개정하여 서민(庶民)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sup>35)</sup>

가토는 같은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히닌·에타라는 존재를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천리(天理)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외국과 교류하는 지금 이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더한 국욕(國辱)이 없기 때문에 히닌·에타의 폐지를 건의하고 있다. 요컨대 국내적으로 히닌·에타가 차별받음으로써 그들이 개인적으로 ‘욕(辱)’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존재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국욕(國辱)’을 받는 것이 훨씬 문제라는 것이다. 히닌·에타의 폐지라는 ‘천리(天理)’=천부인권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한 것이 없는 국욕’을 해소한다는 국가주의의 목적에 귀속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이 획득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욕’의 주체는 ‘일군만민(一君萬民)’이라는 이념을 실천하는 ‘황국’, 즉 천

33) 1869년 6월 18일, 『えた・茶筌が神祭に關与することを嚴禁』, 原田伴彦・上杉聡 編, 앞의 책, p.412.

34) 1869sus 4월 25일, 『川原者の風俗取締り等を大阪府から布達』, 위의 책, p.273.

35) 明治文化研究会編, 앞의 책, p.142.

황제 국가이다.

다른 2건의 의견서도 가토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타의 생사여탈을 좌우할 수 있는 우두머리의 특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에타의 천리(天理)=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도 “황국의 인민”인 이상 “조정의 대권(大權)”=국가의 재판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sup>36)</sup> 에타·히닌 신분을 폐지하고 피혁업자로 규정하여 하쿠쇼(百姓)·초닌(町人)과 동일하게 만들자는 의견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면제받은 “수십만 석”의 세금을 확보하여 “막대한 국익”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sup>37)</sup> 우에스기 씨가 1871년 천칭폐지령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밝혀낸 도쿄부의 의견서에서도 에타·히닌의 천리가 아니라 “황국의 세상에서 에타·히닌의 칭호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sup>38)</sup>

물론 우에스기 씨가 밝혀냈듯이, 천칭폐지령이 실시된 직접적인 계기는 에타 등에게 인정되던 ‘천민 택지’의 ‘지자(地子) 면제’가 당시 예정되었던 지조개정의 걸림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인식한 메이지 정부의 해결 방향이 ‘천민 택지’의 ‘지자 면제’ 금지 또는 취소가 아니라 천칭폐지령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칭폐지령이 발포된 1871년 8월 28일은 폐번치현(廢藩置縣)이 실시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고, 이를 전후로 화족·사족·평민 혼인허가(1871.8.23)와 졸족칭(卒族稱) 폐지(1872.1.29)도 이뤄졌다. 이것은 폐번치현이라는 국가차원의 행정조치가 신분제라는 지금까지의 분절적 사회구성원리를 국민이라는 균질적 사회구성원리로 재편성하지 않고서는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왕정복고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에타에 관한 신분적 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한편, 천황을 정점으로 한 국가체제 만들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를 지탱하는 존재로서 국민이 ‘상상’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에 에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36) 1869년 5월, 大岡玄蔵, 『生殺ノ權、穢多頭に委ヌヘカラサルノ議』, 위의 책, p.154.

37) 1869년 5월, 内山総助, 『穢多非人ノ身分御改正ノ議』, 위의 책, p.155.

38) 1870년 12월, 『東京府上申』, 原田伴彦·上杉聡 編, 앞의 책, p.59.

우선 바쿠후 말기의 에타가 바쿠후 측과 바쿠후 반대파 측 모두 동원되었던 것에 비해, 왕정복고 쿠데타 이후 발생한 보신(戊辰) 전쟁에서는 주로 ‘관군’에 참가했다.<sup>39)</sup>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메이지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문명개화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다음은 1870년 12월 17일 교토의 센본마스야(千本升屋) 모헤이(茂兵衛)등이 교토부에 제출한 오명(汚名) 폐지 탄원서이다.

철도를 개설한다는 취지는 천한 아래 것들까지도 어국익(御国益)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 무라(村)는 본래 오우(奥羽)의 사민(士民)이었지만 그중 분별없는 자도 있던 탓에 언제부터인가 결국 에타라는 오명(汚名)을 얻었습니다. (중략)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다가 복고(復古) 어일신(御一新)을 맞이하는 것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무엇으로 미충(微忠)을 다하여 한 번에 오명을 벗겠습니까? 예전부터 어국은(御国恩)에 보답할 길을 찾고 있던 차에 철도 개설 소식을 들은 바, 우리 무라와 오사카 와타나베무라(渡辺村) 등의 동지들이 교토부터 후시미(伏見)까지의 실비(實費)를 헌금하자는 의견을 내서 야마토(大和)·가와치(河内)·이즈미(和泉)·셋츠(摂津)·기이(紀伊)·단바(丹波)·오우미(近江)·하리마(播磨)의 5백여 무라(村)가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큰 곳은 200명에 상응하는 돈을 내고, 작은 곳은 운송 등 인력을 차출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따라서 우리 무라와 같은 오명을 폐지하고 그 옛날 오우(奥羽)의 민(民)과 같이 취급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sup>40)</sup>

여기에서는 바쿠후 말기와 동일하게 케가레 씻김이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오명’ 폐지의 정당성은 ‘국은’에 보답하기 위한 ‘양이(攘夷)’ 실천이었던 것이 당시의 문명개화정책 중 하나인 철도 건설이라는 ‘국익’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것은 바쿠후 말기 이래의 에타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천부인권이 아니라 천황과의 관련성 또는 국가에 대한 기여도 등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 다른 에타 호칭 폐지 탄원서에서도 ‘국은(国恩)’·‘신주(神州)’·‘구폐 어일세(御一洗)’·‘어일신(御一新)의 어인혜(御仁惠)’<sup>41)</sup> 등과

39) 『奥羽越戦争に官軍として機多隊が参戦』, 위의 책, p.181. 아이즈(会津) 전쟁에서 다카다번(高田藩) 관할지역의 에타들은 25명 남짓의 소대를 조직하여 관군의 척후병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40) 1870년 12월 17일, 『汚名廃止の歎願を京都府に提出』, 南博 責任編集, 앞의 책, p.371.

같은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에타라는 ‘오명’을 폐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사용된 수사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언설’은 에타 스스로 제시한 에타 호칭 폐지의 논리가 ‘일군만민’의 이념 아래 형성되기 시작한 천황제 국가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속성을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에서 천칭폐지령은 결정적이었다.

#### IV. 나오며 : 천칭폐지령이 만들어 낸 주술

1871년 8월 28일 천칭폐지령이 발표되었다. 물론 이에 대한 평민의 저항은 격렬했다. 이들은 ‘구폐(舊弊) 일소’라는 “조명(朝命)의 엄중한 취지를 받든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구습(舊習)을 변혁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천칭폐지령 철회를 요구했다.<sup>42)</sup> 또한 옛 에타가 거주하는 부락과 일반 무라 사이에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sup>43)</sup> 이러한 상황을 시찰한 민부순찰관(民部巡察官)은 다음과 같은 지방순찰복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에타를 평민으로 삼는다는 포령(布令)이 있는 후, 에타가 요리집[料理屋]·목욕탕[風呂屋]·머리 묶는 곳[髮結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농상(農商, 평민을 의미함)이 꺼려서 이용하지 않게 되자 요리집 등이 매우 곤란해졌다. 이에 비젠(備前) 오카야마(岡山)에서는 기존의 목욕탕을 초(町)의 목욕탕이라고 하며 목찰(木札)을 미리 나눠 준 뒤, 목찰을 보여주면 목욕탕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목찰이 없으면 초의 목욕탕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고 한다. 이를 전해들은 쿠라시키(倉敷) 주변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sup>44)</sup>

41) 위의 책, pp.369~372.

42) 1871년 10월, 『機多に対する差別的旧習を墨守するよう五四箇村が歎願』, 南博 責任編集, 위의 책, p.381. 같은 시기에 동일한 논리로 무라(村) 23개가 연명(連名)한 탄원서도 제출되었다 (p.382).

43) 1871년 9월~10월, 『賤民制廃止により一般村と部落の間に確執が發生』, 위의 책, pp.380~381.

44) 1871년 11월, 『四国・中国地方の部落問題等に関する民情を民部巡察官から報告』, 原田伴彦·上杉聡 編, 앞의 책, p.73.

오랫동안 케가레의 존재로 여겨지는 에타와 거주지역은 물론이고 생활습관을 달리 살아온 농상(農商)=평민으로서 천칭폐지령이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목욕탕과 같은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소극적으로나마 ‘목찰’이라는 거부 행위를 펼쳤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천칭폐지령 반대를 내걸고 봉기를 일으켰다.<sup>45)</sup>

이렇듯 천칭폐지령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평민들에게 각 현에서는 천칭폐지령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유(說諭)하고 있다.

①종래 에타·히닌 등 그 종(種)이 다른 이유는 모르지만, 사농공상을 사민(四民)이라 하는 것도 필경 그 직업에서 유래하는 바, 에타·히닌 등도 그 직업을 천하게 여기고 서로 낮게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리라.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이유를 근거로 마침내 사민은 교제를 끊고 관부(官府)는 장외(帳外)에 기록하는 폐해가 발생했다. 바야흐로 문명 일신(日新)하는 현재, 구폐를 바꾸어 일반 평민과 동일하게 하므로, 속히 그 폐해를 일소하여 혐의(嫌疑)와 차별을 없애고 (중략) 서로 반성하며 사람이 사람인 이유를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급무로 삼아 오직 이러한 때 이렇듯 감사한 취의(趣意)를 받을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고 새기어 커다란 홍은(鴻恩)에 보답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라.<sup>46)</sup>

②하늘과 땅 사이에 생겨난 것 중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같은 사람이면서 금수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에타와 히닌이다. 본래 에타와 히닌은 틀림없는 인간이다. (중략) 동일한 인간이면서 에타와 히닌 등 별종(別種)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은 명백한 도리(道理)이다.<sup>47)</sup>

③종래 에타라 칭하며 인민 중에서 별종(別種) 취급을 하는 것은 본래 황국(皇國)이 아직 개화되지 못한 때의 일이다. 근래에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우리 황국

45) 예를 들어 1873년 5월에 발생한 미마사카(美作) 혈세잇키에서는 옛 에타의 거주지=부락 습격으로 주택 263채가 불타고 51채가 파괴되었으며 옛 에타 18명이 살해당할 정도였다(『明治六年夏美作全国騷擾概誌』, ひろた まさき編, 앞의 책, pp.110~111 참조).

46) 1871년 9월 18일, 『賤民制廃止について堺県から告諭』, 南博 責任編集, 앞의 책, p.373.

47) 1871년 11월 22일, 『穢多・非人等廃止について広島県から管下に告諭』, 原田伴彦・上杉聡編, 앞의 책, pp.416~417.



인민입에 틀림없고 그 천성과 지식이 평민과 다르지 않으므로 종래의 잘못을 고쳐 평민 일반으로 취급하도록 한다.(중략)

옛 에타에게 고유(告諭)

이번에 에타와 히닌의 칭을 폐지하고 평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깊은 취의를 깊이 감사히 여겨 농업에 한층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모든 행동거지를 청결히 하도록 하라. 무엇보다도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하고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몸을 청결히 하도록 하라. 몸에서 나는 모든 악취에 주의하여 지금까지 평인(平人)이 케가레라 여기던 것을 신속히 바꾸도록 하라.<sup>48)</sup>

여기에서는 에타도 평민도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는 이른바 천부인권사상이 천칭폐지령 발표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문명’이란 용어로 정당화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③의 경우이다. ③은 평민과 에타 양쪽 모두에게 편칭폐지령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평민에게는 이제 에타도 ‘황국 인민’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에타에게는 ‘케가레’를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라고 명하고 있다. 그동안 에타가 별종 취급을 받아 온 이유가 ‘케가레’ 때문이고 이것이야말로 ‘개화’되지 못한 황국의 ‘구폐’임에도 불구하고, 평민에게 ‘케가레’에 대한 ‘문명’적 인식전환을 요구하기보다 ‘개화’되지 못했던 ‘황국’의 피해자 에타에게 스스로 ‘케가레’를 없애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각 현에서는 “케가레 씻김 의식[祓除]을 집행하고 에타·히닌 등에게 참배하도록 하여 오예(汚穢)가 전혀 없음을 보이고 평민도 받아들이다록”<sup>49)</sup> 하는 퍼포먼스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언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전되었다.

이세(伊勢)의 에타무라(穢多村)에서는 이번에 평민과 동일하다는 포고가 발표되자, 바로 다음날 고리(垢離)<sup>50)</sup>를 하여 지금까지의 죄를 씻고서 대신궁(大神宮) 앞에 참배하며 천은(天恩)의 넓음에 감사드렸다. 삼가 신명(神明)에게 경례하고 신전(神前)에서 청결한 불을 지피고 그 불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 그때까지 사용하

48) 1871년 10월 12일, 『賤民制廢止により姫路県から部落内外に告諭』, 南博 責任編集, 앞의 책, p.374.

49) 1871년 10월, 『(高知県)賤民制廢止により旧穢多の人々に清祓を執行』, 위의 책, p.378.

50) 신불에 기원하기 전에 바닷물이나 냉수를 끼었으며 심신의 더러움을 빼서 맑게 하는 목욕제계.

던 불을 버리고 일상의 식사나 목욕에 이르기까지 신명의 불을 사용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오속(汚俗)을 버리고 새로이 바르게 하는 것을 상찬(賞讚)했다.<sup>51)</sup>

이처럼 각 현이 개최한 에타의 케가레 씻김 퍼포먼스는 바쿠후 말기에 호아시가 제안한 에타 폐지 방안과 동일한 방식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민평등이라는 ‘문명일신(文明一新)’에 기초한 천칭폐지령이 발표되었지만, 각 지역에서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케가레 씻김이라는 신도적 행위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신분적으로 하쿠쇼와 달랐던 에타가 하쿠쇼와 동일한 ‘황국 인민’이 되기 위해서는 ‘문명일신’을 ‘천황’에 수렴시키고 이를 ‘일군만민(一君萬民)’이라는 표어로 구체화하는 왕정복고 이데올로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천칭폐지령이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후, 옛 에타는 “메이지 황은(皇恩)이 넓고 두터워 마침내 우리를 국민 평등의 적(籍)에 편입하시고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sup>52)</sup>는 문구를, 정치적인 수사일지라도 전면애 내세웠다. 이것은 이후 ‘부락민’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또 다시 ‘평민’ 출신 ‘국민’들에게 차별을 받게 되는 에타와 히닌이 ‘국민 평등’의 권리를 ‘천황 아래 평등’이라는 천황제 국가 인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에타와 히닌에게 메이지유신이 한편으로는 자신을 속박해 온 신분으로부터 해방된 ‘국민’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창출된 천황제 아래의 ‘신민’이라는 주술로의 속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51) 『開化新聞』(1871.12), 南博 責任編集, 앞의 책, p.377.

52) 1881년 11월, 『緒言』, ひろた まさき編, 앞의 책, p.117.

참고문헌

- 류교열(1998), 『明治初期의 華族制度-宗族制度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제9집.  
일본부락해방연구소 지음, 최종길 옮김(2010), 『일본 부락의 역사-차별과 싸워온 천민들의 이야기-』, 어문학사.
- 多田好問編(1906), 『岩倉公実記』中卷, 岩倉公旧蹟保存会.  
滝本誠一 編(1916), 『日本經濟叢書』卷26, 日本經濟叢書刊行会.  
明治文化研究会編(1955), 『明治文化全集』第1卷 憲政編, 日本評論社.  
佐藤昌介·植手通有·山口宗之編(1971), 『日本思想大系55 渡辺崋山, 高野長英, 佐久間象山, 横井小楠, 橋本左内』, 岩波書店.  
内閣官報局編(1974 복각), 『法令全書』第1卷, 原書房.  
内閣官報局編(1974 복각), 『法令全書』第4卷, 原書房.  
原田伴彦·上杉聡 編(1984), 『近代部落史資料集成』第1卷 『解放令』の成立, 三一書房.  
大久保利謙(1986), 『大久保利謙歴史著作集1 明治維新の政治過程』, 吉川弘文館.  
ひろた まさき編(1990), 『日本近代思想大系22 差別の諸相』, 岩波書店.  
上杉聡(1990), 『明治維新と賤民廃止令』, 解放出版社.  
南博 責任編集(1990), 『近代庶民生活誌11 天皇・華族』, 三一書房.  
尾佐竹猛 著, 磯川全次 校訂·解説(1999), 『明治四年賤称廃止布告の研究』, 批評社.  
藤田覚(2003), 『近代の胎動』, 藤田覚 編, 『日本の時代史17 近代の胎動』, 吉川弘文館.

- ❖ 투고일 : 2013.12.27  
❖ 심사완료일 : 2014.02.05  
❖ 게재확정일 : 2014.02.10

## Abstract

## 賤称廃止令と明治維新

朴三憲

本稿では、賤称廃止令の発布を前後にして登場する穢多・非人関連の談論を、近代日本の国民形成という観点から再構成したものである。これは、近代日本の少数者として差別をいけてきた穢多・非人出身の「部落民」に明治維新がどのような意味であったのか探ってみる作業でもあった。その結果は、次のように纏めることができる。

一つ、幕末の対外危機という外的環境の変化の中で、支配層において穢多は「日本人」の資格をえるためには神社参拝という穢れの祓いを必ずしなければならない差別的な存在として認識された反面、穢多自らは、穢れの祓いという条件と関係なく「国恩」に報いるために「先鋒で死力」を尽くすことができる存在＝「日本人」という自覚が出始めたのである。要するに、幕末の対外危機という環境の中で、穢多自らが誰よりも前に立って領土を守り、国恩に報いる国家レベルの行為こそ「穢多という二文字」廃止の重要な要件であることを認識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二つ、王政復古以後にも、以前として穢れの祓いという条件が賤称廃止の前提として維持されていた。しかし、一方では、同じ人類にも関わらず、穢多・非人という存在をひとではないという取扱いするのは、天理にぐれるとともに、外国と交流する今日にそのまま放置することは國辱であるという国家主義的な論理を根拠にして賤称廃止が主張されるようになった。

三つ、実際に賤称廃止令が発布されてから、これに対する平民の抵抗が激化する中で、各県では穢多の穢れの祓いというパフォーマンスを行うことで反発する平民を説得しようとした。国家的レベルでは、士民平等という「文明一新」に基づいて賤称廃止令が発布されたが、各地域でこの法令を執行するためには、穢れの祓いという神道的行為からその正当性を主張するしかなかったのである。これは身分的に百姓と異なった穢多が百姓と同一の「皇国人民」となるためには、「文明一新」を天皇に収斂し、これを「一君萬民」というスローガンで具体化する王政復古イデオロギーが必修的であったのを示している。

結論的に、明治天皇の名でが発布された賤称廃止令という存在は、部落民において明治維新が、一方では自分を束縛してきた身分からの解放を、他方では新たに創出された天皇制という呪術への束縛を意味することであった。

Key Words : 穢多(Eta), 非人(Hinin), 明治維新(The Meiji Restoration), 天皇(Tenno), 国民(Nation)

